보건복지부	보 도 참 고 자 료		
배 포 일	2022.3.2 / (총 2 매)	담당부서	요양보험제도과
과 장	백 형 기	전 화	044-202-3490
담 당 자	김 정 열		044-202-3492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3.2~4.11)

□ **보건복지부**(장관 권덕철)는 **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** 및 **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일**(수)**부터 4월 11일**(월)**까지 실시**한다고 밝혔다.

□ 지난 **2021년 12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제1항**이 **개정**되어 종전에 **재가급여 15%, 시설급여 20%로 법률에 규정**되어 있었던 장기요양보험 **재가** 및 **시설급여**의 **본인부담금 비율**을 **대통령령**에서 정하도록 **위임하고,**

○ 수급자의 **장기요양 등급**, 이용하는 **급여의 종류 및 수준** 등에 따라 **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** 하였다.

□ 이러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**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 제15조의8을 신설**하여 **종전에 법률**에서 정하였던 **본인부담금 비율**(재가 15%, 시설 20%)을 시행령에서 종전 법률과 **동일하게 규정**하되,

○ **신규 서비스를 확대**하고 **급여 이용을 유도**하기 위해 **각 본인부담금 비율 이내**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**본인 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** 단서조항을 추가하였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□ 그 외에도 지난 12월 법률 개정으로 인해 **일부 조의 항 개수가 확대**됨에 따라, 해당 법률 조항을 **인용한 시행규칙의 조문 정비**도 함께 이루어진다(시행규칙 제33조, 제34조 및 제35조).

□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, **관련 의견**은 **2022년 4월 11일**(월)**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제출**하면 된다.

○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(www.mohw.go.kr) → 정보 → 법령 → 입법/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 의견 제출방법 (우편) >

○ **제출처**

- 주소 : (30116)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, KT&G 세종타워B 13층 요양보험제도과
  * 전화: (044) 202 - 3492/3497, FAX : (044) 202 - 3971

○ **기재사항**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의견)
- 성명(법인·단체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등

※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

<별 첨> 1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